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월 16일,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8.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민형배의원)

재난 및 참사 발생 시 ‘언론취재’도 현장대응업무 중 하나로 명시
하여 취재 언론인이 겪는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보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현장대응업무를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은 해당 법에 의한 법적 보장 여부가 불분명함. 2022년 4월, 한국기자협회에 따르면 기자 61%가 취재 과정에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하였음. 특히 2022년 이태원참사를 계기로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지만, 법적 구속을 담보하지 않는 권고 지침이며, 지상파 3사를 비롯한 일부 방송사만 자체적으로 전문 심리상담 기관과 연계한 트라우마 치유를 제공하는 형편임.

이에 현행법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를 ‘구조, 복구, 치료,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로 개정하여 사고 및 참사에 따른 현장 취재 언론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보장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세일)

개정안은 언론취재에 종사하는 사람도 심리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데에서 입법취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인데,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2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의 제정 동기도 이와 유사함. 해당 가이드라인은 재난현장을 취재하는 기자가 피해자 또는 유족과 동화되어 심리적 거리를 두기 어렵게 되거나 충격적인 재난 장면을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두통이나 구토와 같은 신체적 반응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는 데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다만, 향후 입법과정에서 언론취재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재난현장이 갖는 엄중한 특성을 고려할 때 언론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의 취재로 한정하거나, 취재뿐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 편집을 담당하는 종사자도 포함시킬지 등에 대하여도 논의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재난현황에 대한 취재를 담당하는 종사자를 현행법에서의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대상자로서 각 호의 하나를 신설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